2022년 제13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

[1호 안건: 부평동 132-5번지 일원 업무시설 신축(계획)]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도시경관건축과			심의일자	2022. 8. 9.
 건축종별	[○]신축, []대수선, []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김복수, 노거희				
대지현황	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				
	132-5 외8필지		관련지번		
	대지면적 3,689.30㎡	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일반상업지역, 시가지경관지구, 방화지구, 상대보호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2,323.32m²		건폐율 62.97%		층수 지하 : 7층/ 지상 : 27층
	주용도 업무시설, 근생시설		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		건축물 동수 2동
	최고높이 95.80m		용적률 959.87%		연면적 합계 53,053.53m²
심의내용	구 분	심의결과			
	(계획분야)관련	O 「건축법」 제47조(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) 위반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○] 부결 ※ <u>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u>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